

〈참고자료 2-2〉

■ 교육공무원 징계령 [별지 제2호서식] 〈개정 2020. 7. 28.〉

확인서

1. 인적사항	소속 (현재) (혐의 당시)	직위(직급) (현재) (혐의 당시)	성명 (한글) (한자)		
2. 비위유형	가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9조의2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비위		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	
	나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제2호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9조의2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		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	
	다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 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 지 않은 행위		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	
	라. 학생 성적 및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비위		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	
	마. 성폭력·성희롱 등 성비위		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	
	바.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		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	
	사. 학생에 대한 신체적 또는 정서적 폭력		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	
	아. 신규채용, 특별채용, 전직, 승진, 전보 등 인사 관련 비위		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	
	자.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비위		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	
	차. 성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비위		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	
	카. 성비위 관련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		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	
	타. 「공직선거법」상 관련 비위		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	
	파.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·신탁과 관련한 위무 위반		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	
	하.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(소극행정 제외)		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	
거. 소극행정		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		
너. 부정청탁		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		
더.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		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		
3. 징계부가금	대상 여부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, 대상금액(원, 배)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 상황 등				
4. 감경 대상 공적 유무 및 감경 대상 비위 해당 여부	공적 사항		징계 사항[불문(경고) 포함]		
	포상일	포상 종류	시행청	날짜	종류
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					
5. 혐의자의 평소 행실	* 징계 횟수, 주의·경고 횟수, 직무수행 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				
6. 그 밖의 사항	* 그 밖의 사정 참작 사유 기재 위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.				
작성책임자 (소속 및 직위)		(직급)	(성명)	(서명 또는 인)	
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(신청)권자(직위)				직인	